

행정자치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관 련 자 ① 진주시 ○○과(전 ○○소) 지방○○○○ ○○○

② 진주시 ○○○○원(전 ○○면) 지방○○○○ ○○○

③ 진주시 ○○○○과(전 ○○○면)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2. 3. 2.부터 2014. 7.31까지 진주시 ○○소에서 ○○담당으로 근무하였고, 지방○○○○ ○○○은 2012. 8. 2.부터 2015. 7. 20까지 ○○면 ○○○○○○○담당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방○○○○ ○○○은 2013. 7. 3.부터 2015. 7. 19까지 ○○○면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제2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 후 기록물 철단위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

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보존기간 만료시 기록관에서 보존중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폐기대상을 선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 법령에서 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법」 제4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폐업 의료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아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진료기록부 등은 공공기록물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므로,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소관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관련 기록물(각종 부책 및 서류 등)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서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폐기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평가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 진주시(○○○○과)는 ○○○ 이빈후과의원, ○○○○○○○○의원 등 폐업한 의료기관 5개소로부터 이관받은 진료기록부 등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보존기간 경과를 사유로 2013년 1월 14일 임의로 폐기한

사실이 있고,

경상남도 진주시(○○면)는 2013년 9월 10일에 법원으로부터 폐기 인가받은 가족관계 관련 기록물 21권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폐기한 사실이 있으며,

경상남도 진주시(○○○면)는 2015년 5월 26일에 법원으로부터 폐기 인가받은 가족관계 관련 기록물 28권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사무소 문서세단기로 파쇄하는 방식으로 자체 폐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진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평가심의회 심의에 따라 기록물 평가·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기록물관리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